

2008. 4.

수 신 : 제천시의회 의장

제 목 :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1. 발의의원 서명서 1부.

2.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발의자 : 강현삼 의원 (서명또는 날인)

외 2인

##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서명서

의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강현술		
양수경		
김봉수		

##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51
----------	------

제출년월일 : 2008. 4. 7.  
제출자 : 강현삼의원외 2인

### 1. 개정이유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사업추진 실적과 정산,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사회단체장이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 명시(개정조례안 제10조 제1항)
  -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
- 시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개정조례안 제10조제2항)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5. 관계법령 : 붙임

##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보고 등)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보조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사 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등) ①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 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 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 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 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사회단 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 영하여야 한다.
③ 업무관련 부서의 장은 보조단 체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 후 자 료를 보관하여 다음 연도 보조사 업의 심의시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야 한다.	③(삭 제)

## 관 계 법령

###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